

2020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업력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②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 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2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3~'18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3~'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3~'18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4~'19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간 : [2020. 3. 16\(월\) 09:00 ~ 2020. 4. 29\(수\) 18:00](#)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해야 함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 02-2124-3145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명문장수기업센터	02-3275-0175 02-3275-3098

5 국민추천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020. 3. 16.(월)~ 4. 22.(수)
-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민원>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 추천기간(~4.22.)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추천된 내용을 안내
 -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4.29.) 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6 **평가 및 확인**

세부일정 및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① 요건확인	▪ 업력, 업종,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필요시 서류보완)	2020.5월
② 서면평가	▪ 업력(45년+ α),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 평가	2020.5~6월
③ 현장평가	▪ 사회적 기여(사회공헌·CSR 등), 기업역량(지식재산권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평가	2020.6~7월
④ 평판검증	▪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대해 공개검증	2020.7~8월
⑤ 심의·확정	▪ 평가 및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적합여부 심의·확정	2020.8월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세부사항은 붙임 3 참조)

7 기타 및 문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설명회는 서면자료 게시로 대체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기업승계> 알림마당> 자료실] 23번 게시글(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 02-2124-3145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명문장수기업센터	02-3275-0175 02-3275-3098
정책 관련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042-481-1662

[붙임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7.26>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기업구분(법인기업/개인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사업장 주소	
	주업종	업종코드(세분류)
담당자정보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법인기업	개인기업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동의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p>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p>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확인 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동의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 </p>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기업명 : (인)

신청자(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귀중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안)	비고
장수 (60)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명문 (40)	경제적 기여 (12)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geq 100\%$	필수지표 외 지표 2개 이상 충족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geq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geq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leq 150\%$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사회적 기여 (16)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각 지표별 기본 점수의 가·감점 포함 점수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오염방지(2)	대기·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표명, 성과 관리 여부 등		
	기업 역량 (9)	브랜드/특허/제품(9)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외 시장점유율 신기술·신제품 등 인증 기술·품질 관련 수상 실적	
기업 혁신 (3)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geq 업종별 평균	필수지표	
가점 (6)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geq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종합 (106)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1차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심의			